

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(안)

2017. 11. 9.

관계부처 합동

- ▣ '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(안)'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나,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,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·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(안)을 미리 발표하는 것입니다.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수정·보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순 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| 1 |
| 1. 사업 목적 | 1 |
| 2. 추진 경과 | 2 |
| II.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(안) | 3 |
| 1. 지원 대상 업체 | 3 |
| 2. 지원 요건 | 4 |
| 3. 지원 금액 | 5 |
| 4.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| 6 |
| 5. 지원 방식 및 절차 | 8 |
| 6. 사후 관리 | 10 |

1.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

- ❖ 영세업체 부담경감을 통해 고용위축 방지·최저임금 연착륙 지원
- ❖ 영세업체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조기 발표

1. 사업 목적

-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기업-가계간, 고소득-저소득 가계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내수부진·저성장 고착화
 - * '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% 증가, 가계소득은 138% 증가
 - * '03~'16년중 5분위 근로소득은 70% 증가, 1분위 근로소득은 56% 증가
- 가계소득의 70%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이 시급하며, 일자리·소득주도 성장이 해법
- '18년도 최저임금 인상*은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
 - * 7.15일 최저임금위원회: 시급 기준 ('17년) 6,470원 → ('18년) 7,530원 16.4% 인상
-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, 생산·일자리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성장·분배의 선순환 효과 촉발 기대
- 다만,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치 못한 영세업체의 경우,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
 -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하여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할 필요
 - 이를 위해 3조원 규모의 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」 추진
-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기로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도 강화

2. 추진 경과

- '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, 관계부처 합동 「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」*의 하나로 3조원 규모 '일자리 안정자금' 지원 발표(7.16일)
 - ▲ ① '일자리 안정자금' 직접 지원(3조원 내외)
 - ②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: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,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
 - ③ 불공정관행 근절: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, 가맹점·대리점 보호 강화 등
 - ④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: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 확대 등

- 이후 3개월반 동안 정부 안팎에서 폭넓은 논의·의견수렴 시행
 - 총 23개 기관*이 참여한 관계기관 TF를 구성(7.17일), 11차례 전체 회의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 논의
 - * 기재부·노동부(공동주관), 산업부·중기부·국세청·근로복지공단·노동연 등

 - 총 19차례 업계간담회 개최로 현장애로·제도개선 건의 청취(~9월)
 - * 노동부·산업부·중기부 주관, 소상공인연합회·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

 - 사업체 현장 심층면접*, 유사 사업 집행전문가 간담회** 등으로 시행방안 적정성, 효과적 집행방안, 유사사례 분석 등 사전 검증
 - * 소매·음식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 58개소 방문(노동부, 10.22~24)
 - ** 근로복지공단, 고용센터 등(11.6~7)

- 관련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 시행계획 단계적 구체화
 - 8.21일 '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' 국무회의 의결 후 8.29일 '18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(2.97조원), 주요사항 발표

 - 경제현안간담회(부총리 주재, 11.3)를 통해 시행안 종합 점검

- 앞으로 국회 예산심사시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, 시행 시점 까지 수혜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 지속 보완

II. 「일자리 안정자금」 시행계획(안)

❖ 「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」의 기초* 하에서 영세업체들이 '누락없이, 부담없이, 편리하게' 지원받도록 제도·전달체계 설계

- * ① 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
-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
-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

1. 지원 대상 업체

❖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, 인건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

□ 30인 미만*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

*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%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 ('16년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)

○ '사업주'는 고용보험 적용단위*로 판단

*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, 지사·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

○ 노동자수는 직전 3개월의 매월 말일 현재 노동자수 평균으로 판단

□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

○ 업종 특성상,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 등 감안

○ 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 경비·청소원이 대상

○ 실효성 있는 해고방지를 위해, 경비·청소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

□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

○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 지원제외

*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5억 이상),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

2. 지원 요건

❖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(최저임금의 120% 수준) 노동자 지원

❖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되,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

□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

○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, '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(157만원)의 120% 수준으로 보수상한 설정

* 선원법상 선원은 '18년 선원최저임금('17.12월 결정)의 120% 수준 미만 지원

○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조건

○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의무 부과

□ 1개월 이상 고용

○ 최소한의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1개월 이상 고용 요건 설정

○ 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

□ 최저임금 준수, 고용보험 가입

- 최저임금·고용보험은 노동자 권익보호와 고용안전망의 근간
-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
 - * 합법취업 외국인, 5인 미만 농림·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·어가의 노동자, 초단시간(주15시간 미만) 노동자,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등
- 미가입자가 최대한 가입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병행 추진
 - * ①두루누리사업 강화 ②건강보험료 경감 ③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

3. 지원 금액

- ❖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, 최저임금 추세 초과 인상분에 더하여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분도 지원
-

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

- '18년 최저임금 인상률(16.4%)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(7.4%)을 초과하는 만큼(9%p)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
- 월중 입·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
- 단시간 노동자(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)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

4.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

- ❖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정책을 지속 추진
- ❖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보험료 경감방안 마련
 - * 고용보험 가입률: (5인미만) 73.9%, (5~9인) 92.8%, (10~29인) 94.5%
- ❖ 이를 통해, 영세업체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고용안전망 강화

① 두루누리 사업 지원 강화 (10인 미만 사업체)

< 두루누리 사업 개요 ('17년 기준) >

- ▶ (요건) 10인 미만 사업체, 월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
- ▶ (지원) 고용보험·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일정비율 (신규가입자 60%, 기존가입자 40%)
- ▶ (절차) 사업주 신청 후 전월 보험료 완납시 당월 보험료에서 차감

- (지원대상 확대)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, 지원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('17년)에서 **190만원 미만('18년)으로 상향**
- (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) 보험료 지원 비율을 60%에서 **80~90%로 상향하여, 최소의 본인부담으로 신규 가입 지원**
 - * 5인 미만 사업체·노동자는 90%, 5~10인 미만 사업체·노동자는 80%

② 건강보험료 감면 (30인 미만 사업체)

-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업주·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%를 경감('18년 한시)
 - * 보건복지부 「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」 개정 추진

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(10인 미만 중소기업)

< 현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>

- ▶ (요건) 중소기업, 상시노동자 고용증가
- ▶ (지원) 고용증가 인원(신규채용)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의 50~100%

- (대상노동자 확대)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*인 경우 신규채용 인원 외에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
- (지원수준)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실부담 증가액*의 50%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

* 기타 정부지원금(두루누리, 건보료 경감액 등)은 제외하고 산정

*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없더라도 5년간 이월공제 가능

☞ 부담 경감방안 시행시, '18년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3.8만원에서 경감 後 1.7만원으로 감소(△12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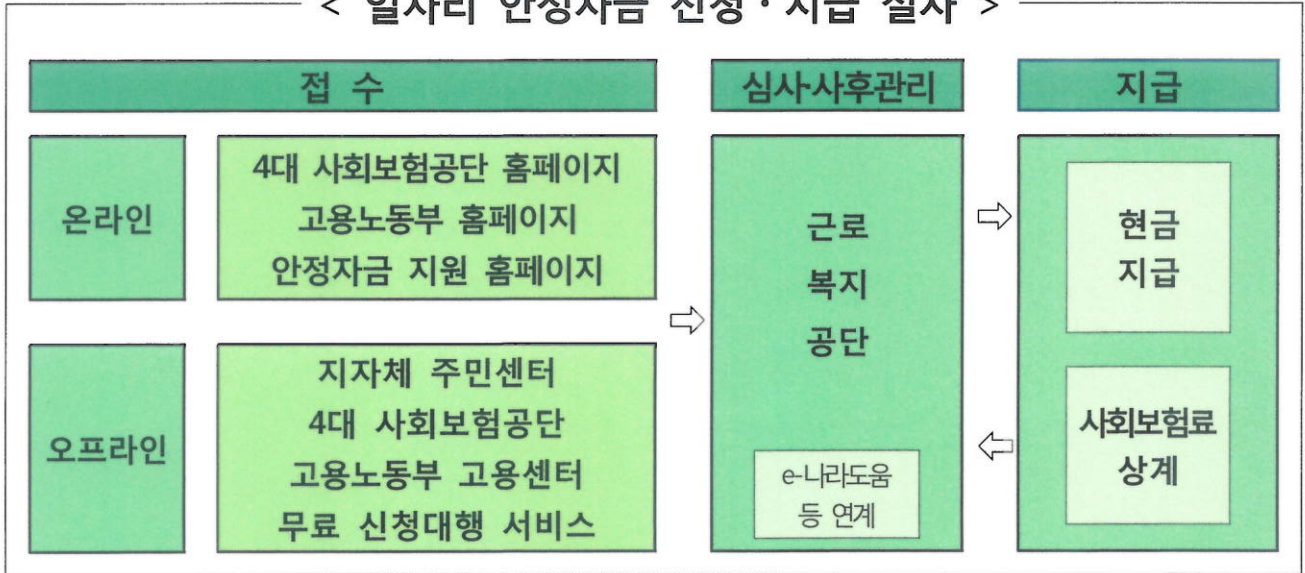
| (단위: 원) | | 합 계 | 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보험료율(%) | | 8.75 | 0.9 | 4.5 | 3.35 |
| 경감 前 월보험료 | | 137,700 | 14,160 | 70,820 | 52,720 |
| 경 감 방 안 | 두루누리 지원 강화 | 76,480 | 12,740 | 63,740 | - |
| | 건보료 감면 | 26,360 | - | - | 26,360 |
| |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| 17,420 | 700 | 3,540 | 13,180 |
| | 합 계 | 120,280 | 13,460 | 67,280 | 39,540 |
| 경감 後 월보험료 | | 17,420 | 700 | 3,540 | 13,180 |

* 5인 미만 사업체, 월 보수 157만원(최저임금 100%) 노동자 기준, 산재보험 제외

5. 지원 방식 및 절차

- ❖ 온라인, 오프라인(4천여개)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편의 극대화
- ❖ 행정자료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·사후 검증

<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·지급 절차 >



① 간소한 신청절차 : 연 1회 신청 + 신청시기 무관 + 무료대행·상담

- (신청횟수)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지급
 - * 추가채용, 감원, 보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
-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
 - 예) 노동자 채용일이 '18.1.1.이나 5월중 신청 → 1~4월분까지 일괄 지급
- (무료대행) 보험사무 대행기관*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
 - *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·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법인·단체 (대한상의, 경총, 업종별 협회 등) 및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(3,178개소)
 - ☞ 사업주와 보험사무 대행기관간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
- (상담서비스 제공)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(근로복지공단·고용센터)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

< 신청서식(안) >

※ 신청자 편의를 위해 최대한 신청서식 간소화

▶ (고용보험 적용대상)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* 활용

* (既가입 사업체)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, (未가입·신규 사업체) 고용보험 성립신고서+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, (일용노동자)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

▶ (고용보험 적용제외자)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한 별도 신청서 + 근로관계 등 확인가능한 서류(예: 근로계약서)

② 폭넓은 접수처 :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

○ (온라인) 4대 사회보험공단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 및 노동부 홈페이지, 일자리 안정자금 별도 홈페이지(1월 오픈) 이용

○ (오프라인) 4대 사회보험공단, 노동부 고용센터,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방문·우편·팩스 접수

* 전국 근로복지공단(56개소), 건보공단(178개소), 연금공단(109개소), 고용센터(94개소), 자치단체 주민센터(3,503개소, '16년)

③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

○ (검증) 전산망 연계를 통해 고용보험·건강보험·국세청 등 보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적격 여부를 신속·엄밀하게 검증

○ (지급방식) 사업주 편의를 위해,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
① 현금 지급 :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

② 보험료 상계(대납) :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

6. 사후관리

①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

- 일자리 안정자금 결정결과에 불복시 민사소송 이전에 이의신청 (결정통지 접수 후 20일내 제출)을 통해 구제 가능
- *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단위에 '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심사위원회(가칭)' 설치·운영

② 철저한 모니터링·점검

- 보조금통합관리망(e-나라도움), 고용보험 DB 등 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부정수급 신고 사이트 및 모니터링 전담팀(근로복지공단) 운영
- *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시 현장조사 등 실시

③ 부정수급 처분

- 부정수급 적발시 해당업체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및 제재부가금(5배 이내) 부과, 필요시 형사고발

☞ 11.9일 시행계획(안) 발표 이후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콜센터(근로복지공단·고용센터)를 운영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

- * 근로복지공단 콜센터: 1588-0075
고용센터 콜센터: 1350